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상호)

이 회사는 주식회사 티씨케이, 일본어로[韓東海カボン株式会社], 영어로[TOKAI CARBON KOREA CO., LTD. 약호(TCK)]라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적)

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① 실리콘웨이퍼 제조공정용 부품 및 소모품 제조 및 판매
- ② 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관련 부품 및 소모품 제조 및 판매
- ③ 반도체 제조공정용 부품 및 소모품 제조 및 판매
- ④ SiC 제품류 및 코팅류의 제조 및 판매
- ⑤ 광섬유 제조 공정용등 반도체와 유사한 각종 고순도 흑연제품의 제조 및 판매
- ⑥ 화학장치용 불침투 흑연제품 및 그와 유사한 흑연제품의 판매
- ⑦ FPD 제조공정용 부품 및 소모품의 제조 및 판매
- ⑧ TaC 제품류 및 코팅류의 제조 및 판매
- ⑨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소재, 부품 및 소모품 제조 및 판매
- ⑩ 광학장치 관련 소재, 부품 및 소모품 제조 및 판매
- ⑪ 카본관련 소재,부품 및 부산물의 제조 및 판매
- ⑫ 상기에 관한 수출입 및 대행업무
- ⑬ 各個에 관한 부대사업

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)

-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안성시에 둔다.
-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공고의 방법)

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tck.co.kr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제 2 장 주식

제 5 조 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

이 회사의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4,000,000 주로 한다.

제 6 조 (1 주의 금액)
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
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,000 주로 한다.

제 8 조 (주식의 종류)
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.

제 9 조 (주권의 종류) 삭제 (2019.03.26)

제 9 조의 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

본 회사는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신주인수권)

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당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의 배분이 가능하다.

1. 삭 제 (2008.03.20)

2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3.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4.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5. 삭 제 (2008.03.20)

6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7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③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⑤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 조제 1 호, 제 2 호, 제 2 호의 2,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일반공모증자 등) 삭 제 (2008.03.20)

제 12 조 (주식매수선택권)

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7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본 회사의 설립,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본 회사의 이사,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,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. 다만, 본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

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(이하 “최대주주”라 함)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할 수 없다. 다만, 본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 를 초과할 수 없다.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
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

3. 본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⑦ 본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.

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
2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
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

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3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⑨ 삭 제 (2009.03.18)

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3 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

본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.

제 14 조 (주식의 소각)

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② 삭 제 (2012.03.22)

제 15 조 (명의개서대리인)

-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이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서만 취급할 수 있다.
-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.

제 16 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삭제 (2019.03.26)

제 16 조의 2(주주명부의 작성·비치)

-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② 본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

제 17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- ① 본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※ 제 1 항에서 정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함
-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제 3 장 주주총회

제 18 조 (소집시기)

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,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.

제 19 조 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0 조 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일시,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의일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 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③ 삭 제 (2015.03.19)
- ④ 삭 제 (2015.03.19)

제 21 조 (소집지)

-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고, 필요에 따라 본점의 인접지역 및 서울 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.

제 22 조 (의장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 사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 34 조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제 23 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주주총회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 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주주의 의결권)

주주의 의결권은 1 주당 1 표로 한다.

제 25 조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

본 회사, 본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본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,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6 조 (의결권의 불통일 행사)

-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본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주주총회의 의결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 4 분의 1 이상의 수를 가지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제 29 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또 그 의사록은 한국어 및 일본어로 작성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 4 장 이사, 이사회, 대표이사

제 1 절 이사

제 30 조 (이사의 수)

-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고,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- ② 삭 제 (2009.03.18)
- ③ 삭 제 (2009.03.18)

제 31 조 (이사의 선임)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2 조 (이사의 임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 단,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종료 후,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,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한다.
- ② 삭 제 (2009.03.18)
- ③ 삭 제 (2012.03.22)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제 33 조 (이사의 보선)

-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30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독립이사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0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4 조 (이사의 직무)

- ① 삭 제 (2009.03.18)
-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5 조 (이사의 보고의무)

- ① 이사는 3 개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본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한다.

제 36 조 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본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37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37 조의 2 (이사의 책임감경)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 배 (독립이사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,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 절 이사회

제 38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, 대표이사의 선임과 본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고,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. 단, 대표이사 회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 34 조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시에는 당해 이사가 개최일의 일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단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 34 조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39 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참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- ③ 삭 제 (2009.03.18)
-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.

제 40 조 (이사회 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41 조 (상담역 및 고문)

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상담역 및 고문을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 3 절 대표이사

제 42 조 (대표이사의 선임)

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1 내지 2 명을 선임한다.

제 43 조 (대표이사의 직무)

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5 장 감사

제 44 조 (감사의 수)

본 회사의 감사는 1 인 이상으로 한다.

제 45 조 (감사의 선임)

-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·해임한다.
-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
-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⑤ 제 3 항·제 4 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46 조 (감사의 임기와 보선)

-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.
-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제 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47 조 (감사의 직무와 의무)

-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즉시 보고하지 않을 시, 또는 보고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⑤ 삭제(2015.03.19)
-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-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⑧ 제 7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48 조 (감사록)

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9 조 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.의결하여야 한다.

제 6 장 계 산

제 50 조 (사업년도)

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까지 1 년간으로 한다.

제 51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, 비치 등)

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대차대조표

2. 손익계산서

3. 삭 제(2012.03.22)

4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
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 주전에 위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 전까지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 및 감사 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, 또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삭 제 (2012.03.22)

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제 5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
1. 제 1 항 각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

2.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

⑦ 대표이사는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※ (주 1)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 주 전(연결재무제표는 4 주 전)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.

※ (주 2)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 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보고서 제출 시 (외부감사인)의 “감사보고서”와 “감사의 감사보고서”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.

제 52 조 (외부감사인의 선임)

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, 회사는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제 53 조 (이익금의 처분)

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① 이익준비금
- ② 기타 법정적립금
- ③ 배당금
- ④ 임의적립금
- ⑤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

제 54 조 (이익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5 조 (분기배당)

-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, 6 월 및 9 월의 말일(이하 “분기배당 기준일”이라 한다)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② 제 1 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
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3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4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
5.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6. 상법 시행령 제 19 조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

④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.

⑤ 제 9 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.

제 56 조 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
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② 제 1 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1998 년 12 월 21 일 부터 시행한다.

2. (시행일) 본 정관은 1999 년 11 월 17 일 부터 시행한다.

3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0 년 6 월 19 일 부터 시행한다.

4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0 년 12 월 20 일 부터 시행한다.

5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1 년 10 월 9 일 부터 시행한다.

6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2 년 3 월 28 일 부터 시행한다.

7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3 년 3 월 27 일 부터 시행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8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4 년 12 월 17 일 부터 시행한다.

9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5 년 7 월 22 일 부터 시행한다.

10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5 년 12 월 16 일 부터 시행한다.

1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7 년 3 월 20 일 부터 시행한다.

12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8 년 3 월 20 일 부터 시행한다.

13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09 년 3 월 18 일 부터 시행한다.

14. 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0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4 조 개정내용은 2010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)

제 32 조 이사의 임기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정관 시행 후 선임되는 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5. 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제 17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 10 조, 제 14 조, 제 37 조, 제 45 조, 제 49 조, 제 52 조, 제 53 조의 개정내용은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16. 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제 18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.

17. 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제 19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.

18. 제 1 조 (시행일)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이 정관은 제 20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
19. 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제 24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다만, 제 9 조, 제 9 조의 2, 제 15 조 및 제 16 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·사채 등의
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

20. 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제 25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21. 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제 26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)

제 45 조제 3 항·제 5 항의 개정규정(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
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.

제 3 조(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)

제 45 조제 4 항·제 5 항의 개정규정(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
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22. 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제 27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23. 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제 31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)

제 21 조, 제 27 조의 개정규정은 202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3 조(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)

① 제 30 조, 제 37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정관	제개정일	2026.03.18
	규정코드	TCK-A-1	Rev No.	32

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<법률 제 20991 호, 2025. 7. 22.> 부칙 제 2 조 단서에 따라 2027 년 7 월 22 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